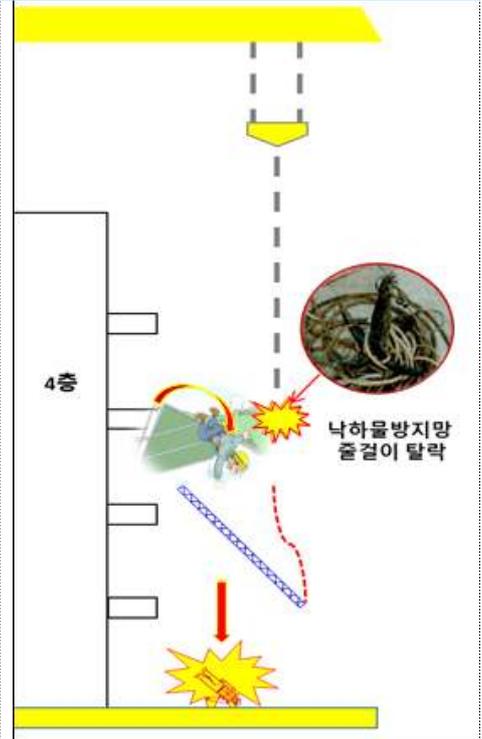




## 재해 개요

- 2020. 2. 27.(목) 08:50경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OO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자(남, 47세)가 낙하물 방지망(시스템형)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4층 에어컨 실외기 설치용 바닥(1.2×0.6m)에서 와이어 로프 길이를 조절하던 중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(H≈9.5m)하여 사망한 재해임



## 재해 발생 원인

- 추락장소에 대한 추락방지 미조치
  - 사업주는 약 9.5m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용 바닥(1.2×0.6m)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함
- 해지장치가 없는 현장제작 달기구(혹) 사용
  - 사업주는 약 30kg의 낙하물 방지망을 양중하는 경우 달기구(현장제작 혹)로부터 낙하물 방지망(시스템형)이 벗겨지지 않도록 해지장치가 설치된 구조의 달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함



## 재해 예방 대책

- 추락장소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
  - 사업주는 떨어질 위험이 있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용 바닥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
- 현장제작 달기구(혹) 금지
  - 사업주는 약 30kg의 낙하물 방지망을 양중하는 경우 달기구로부터 낙하물 방지망(시스템형)이 해체되지 않도록 해지장치가 설치된 구조의 달기구를 사용하여야 함.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